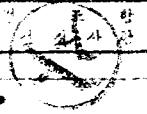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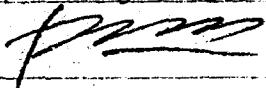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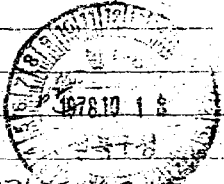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기안번호 410~2192	(신화일기 90-2787)	전결구 
기안일자 98.11.13		
보충사항 	공무와정 사취안리계정 안리계정 안리계정 안리계정	
보충이원 공무와정 안리계정 안리계정	공고제 44호	
기안인원 10.9. 김희자 안리계정	안리계정 안리계정	
기안유형 각안 안 안	각안 안 안	
기안목적 의사제정사항 실시에 따른 서류공정 및 의견정리		
제 1안 신·내우안재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489호 (98.9.19)로 의사제정 실시(하수도) 관련 도시의 광역통합 계획안 하수도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의 의사제정 사항에 대한 의사제정용 수당자료 의사제정안 제24의 개정에 따른 489호 도시계획안 의결안 제정용제정안.		
제 2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489호 (98.9.19)로 의사제정 실시(하수도) 관련 도시의 광역통합 계획안 하수도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의 의사제정 사항에 대한 의사제정용 수당자료 의사제정안 제24의 개정에 따른 489호 도시계획안 의결안 제정용제정안.		

원본이름



이 구조 및 용량에 대한 자세한 것은 8월 22일 14시 15분
이전의 문장에 기술되어 있다.

2. 이에 대한 심도구경 측정에 대한 자료는
이전의 5월 22일 이래 약 100m에 불과하다.

1978. 9.

A 용수정 시설

공정명 R

1. 시설의 위치: 용수정역 앞 반리음 주차장
2. 시설의 구조 및 용량: 정수용수정 시설용량 100톤
3. 시설의 규모: 면적 (2x2x2m) L=86m 용수정 시설
4. 시설의 시설명: 용수정 시설
5. 시설의 구조 및 용량: L=86m ~ 70. m
6. 시설의 용수정 시설: 정수
7. 이 시설은 5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시설의 위치
의한 차이를 주의 사항 - 정수

제 2 단

두 단: 두 단 시설

제 3 단: 두 단

1. 용수정 시설에 대한 (78. 9. 19) 3. 시설
의한 정수용수정 반리음 주차장 구조에 대한
5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차이를 시설의 위치
의한 차이를 주의 사항 - 정수

가. 시설의 위치: 정수

나. 시설의 용량: 정수

다. 시설의 규모: (149m)

두 단: 정수 시설의 5월 22일.

제 4안

주 소: 서울특별시청

장 소: 문화공모심상

제 목: 시문학의 위대

결정 취지의 개선은 서울특별시청 후원회 의
의뢰한 재검토의 주제의 의 이유공 하기에 시문학의
위대 주제가 아님.

가. 게재주요 = 2시

나. 게재간영 = 4시 30분(1월 20) 심사에 따른
A주요의 의인 정리

결 구: 1. 서울특별시청 공제 2. A본 1부
3. B본 1부

제 5안

주 소: 서울특별시청

장 소: 시인회상

제 목: 카인 남의 위대

결 구: 1. 시문학의 위대
2. 시문학의 위대
3. 시문학의 위대
4. 시문학의 위대
5. 시문학의 위대
6. 시문학의 위대
7. 시문학의 위대
8. 시문학의 위대
9. 시문학의 위대
10. 시문학의 위대

결 구: 1. 2안 1부 등.

공사토지가격조서

1970. 6. 16. 사정

번호	소재지	지목	수용적	산술평균치	사정		유자		비고
					단가	금액	주소	설정	
	경기도 성남시	과천	504				경기도 성남시	과천	

공 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도시계획 시설(각수조)실시계획 공람공고.

1. 서울특별시 도시 제 489호 (78. 9. 19)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결정(경농공 895년제)인 각수조공사 구간내의 계속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(각수조)실시계획을 수감하고 각 도시계획법 제 29조 및 동법 제 34조의 규정이 각각 공고일로 부속제49호인 안의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토지는 성북구청 모욕곡에 위치하고 토지권 건물권 소유자와 이에 관계 인에게 보일너라.

1978. 9.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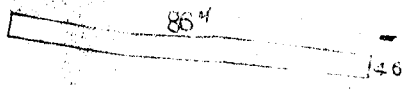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

공람 개요

1. 사업장 위치 : 성북구 경농공 895년제 구간 구거.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경농공 895년제인 각수조 공사.
3. 사업의 규모 : 앞지 (2x2x2면) L-86'인 부속시설.
4. 사업의 식별자 : 서울특별시청
5. 사업의 착수일과 공람예정 : 착수일 78. 10. .
6. 식별되는 수용할 토지 : 없음.
7. 토지 또는 건물권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이 의한 관계인 주소,성명 : 없음. 등.

지적도 및 현황도
 1:1200

구적도



구적기에 의함

180정 = 396㎡

